

첨 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8. 1.



금융위원회



목 차



I. 2017년 성과와 평가	1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9
III. 2018년 업무추진방향	13
1. 기본방향	13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15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7
추진전략① 금융부문 쇄신 → 금융신뢰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	17
추진전략②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적극 지원	21
추진전략③ 포용적 금융 → 소득주도성장 지원	26
추진전략④ 금융산업 경쟁 촉진 →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37
추진기반 :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43
V. 공통과제 추진계획	49
1.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49
2. 신용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위한 규제 합리화(감등규제)	50
3. 사이버 보안 강화(국민 안전·안심 정책)	51
4. 근무혁신 추진계획	52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53

I. 2017년 성과와 평가

□ 혁신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강화**
 -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 ('16년) 115조원(계획(110.7조원) 대비 4.3조 초과) → ('17년) 123.6조원(계획(117.5조원) 대비 6.1조 초과)
 - **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 실적 : ('17년) 23.8조원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 확대
 - * ('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등 혁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16.1월 제도 시행 이후 '17.12월까지 274개 기업이 452억원 조달(평균 1.6억원) → 펀딩 성공기업의 '17년중 고용증가율 22.5% (일반중소기업은 1.9%['16년])
 - ** '13.8월 출범 이후 7.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 1,022개 기업에 4.3조원 투자
- 다양한 핀테크 업체, 초대형 IB 등 신규 플레이어 출현으로 금융 산업에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강화
 - * 카카오뱅크 출범('17.7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 확대, 해외송금수수료 인하 유도 (기존 은행의 1/5~1/10) 등 은행권 내 경쟁 촉진
-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 ('17.10월)하여 핀테크와 같은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중심 경제' 추진 뒷받침 ⇨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필요

□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견인을 위한 시민금융 지원 강화

-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 ('17.8월, 21.7조원, 123.1만명)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방안 마련('17.11월)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17.7월) 하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연간 약 3,500억원)

* (영세)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 약 46만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 추가 절감 효과 발생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4대 서민상품 공급규모(조원) : ('15년) 4.7 → ('16년) 5.1 → ('17년) 6.7(예상)

** 사잇돌대출 공급한도(1조원→2.15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추가) 확대('17년말까지 1.3조원 공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16년말 33개 → '17년말 42개) 등 서민에 대한 금융상담 및 재기지원 강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ISA),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자문업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증식 지원

* ISA('16.3월 출범) : '17년말 기준 가입금액 4조원 돌파(212만 계좌)

- 일상 생활속 소비자의 금융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17.9월, 10대 과제 발표)

* 숨은 보험금(7.4조원) 찾아주기(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오픈, '17.12월)

◇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포용적 금융'의 본격 추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배려를 보다 정교화

□ 잠재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가계부채 위험요인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 해결 방안 마련*(「가계부채 종합대책」, '17.10.24일)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 3대 목표 및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경기 민감업종인 조선·해운업에 대해 既 확립된 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조선) 대형사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이행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해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한국선박해양, 캠프 선박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

* '17.3분기말 기준, 은행 BIS 15.4% 보험 RBC 264.1%, 증권 NCR 600.9% 등 쏠 금융업권이 감독규정상 기준을 크게 상회

◇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 제고 ⇨ 금리상승 본격화 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객관적·중립적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17.8~12월)하여 금융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권고안* 마련

* ①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②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④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금융감독원도 외부전문가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①인사·조직문화 혁신, ②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③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혁신방안 마련·추진중

○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17.12월)

○ 「회계개혁·선진화* 3법」 공포('17.10월), 자본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인프라 확충** 등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 강화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과징금 신설(상한 없음) 등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17.3월), 불공정거래 조사 전산시스템 개발('17.12월)

◇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금융당국·금융산업 쇄신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신뢰 회복

과제명	주요 실적
핵심과제 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1. 기술금융·동산담보 활성화 기반 강화	'17년 하반기 TF 논의를 거쳐 '18년 상반기 중 대책발표 예정(동산담보 → '18.2월, 기술금융 → '18.6월)
2.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방안 마련중 → '18.1월중 발표 예정 → '18.3월 폐지
3. 4차 산업혁명 펀드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혁신모험펀드(10조원) 조성 및 운영계획 발표('18.1.17일)
4. 일자리·창업 지원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개편방안 추진 → '18.하반기 발표 예정
5.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체계 개편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선방안 발표('18.1.19일)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마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18.1분기) → '18.상반기 국회 제출
7.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마련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18.2월)
핵심과제 2 :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1.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7.7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연매출 2·3억 → 3·5억 이하)
2.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18.2.8일~) 및 불법사금융 단속·서민금융 지원 등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마련('18.1.11일)
3.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총 22조원(123만건) 소각('17.8월), 은행·카드사 등 민간금융사 총 8조원(177만건) 소각(~'17.12월)
4.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마련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17.11.29일)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적극 채무조정 추진
5. 금융회사 여신심사 역량 제고	新DTI 및 DSR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17.11월) → 新DTI '18.1월, DSR '18.下 시행
6.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중도금 보증건수 제한(인당 2건 → 세대당 2건)('17.9월),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90→80%)('18.1월)
7. 자영업자·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18.1.18일)
8.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모기지 개편	비소구 방식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만원 → 5천만원)('17.12월)
9. ISA 제도 개선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완료('17.12월, 조특법 개정) * 중도인출 허용 및 서민형 비과세한도 확대(250→400만원)
10. 개인연금법 제정	개인연금법 제정을 대신해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가입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국정과제 21)

- 新DTI, DSR 도입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17.11월)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 강화
-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18.2.8일~)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17.12월)도 마련
-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17.8월, 21.7조원, 123.1만명)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방안 마련('17.11월)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국정과제 22)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으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용이해짐에 따라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출현 기대
- 금융회사의 고액성과급 수령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장기손익을 반영한 재조정 의무화(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완료, '17.9월)
 - * 지배구조법은 국정과제 계획 수립('17.8월) 이후 추가로 제기된 국회 논의 내용('17.10월), 금융혁신위 제안('17.12월)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안 마련중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공개('17.11월~)하고 안전도 원칙 공개('18.1월~)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17.10월~)

□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국정과제 29)

- ISA가 국민자산증식수단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7.12월)
- 안정적인 서민 재원 마련, 원스톱 신용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TF 구성
- 사잇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중신용·중위소득자를 주고객으로 6~18%수준의 금리 형성)

□ 금융위원회 주관 국정과제 과제별 이행현황

세부과제	주요 실적
국정과제 21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 부채 위험 해소	
1.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新DTI, 단계적 DSR 도입방안 마련,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17.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
2.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최고금리 일원화 및 인하(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 마련
3.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방안,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해외 입법례 분석, 여론조사 실시 등)
5.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6. 비소구 주담대 확대	유동화방식 디딤돌대출에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도입
국정과제 22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금융투자업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완료
2.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3.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금융위·증권위 의사록 공개(운영규칙 개정), 정책실명제 종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전문직 공무원 배치, 해외금융 법률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마련
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5.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마련,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종합계획 마련, 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국정과제 29 :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1. Ko-ISA 실효성 제고	ISA 규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16년 33개→'17년 42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T/F 운영
3. 안정적인 서민금융 자원 마련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의 휴면계정 출연 근거 마련, 안정적인 서민금융자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T/F 운영
4.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사잇돌 대출 규모 확대
5.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지역재투자제도 현황 점검 및 연구용역 진행
6.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확산	개인 회생·파산 신청비용 지원대상 확대 방안 마련

1. 이행완료 및 추진중인 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협의체 발족 및 세부 검토 진행
 -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발족('17.9월) 및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기 위한 실무작업반 분석 개시('17.9월~)
- 홈쇼핑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상품의 불완전 판매요인 개선을 위한 홈쇼핑 검사 실시('17.4분기) 및 보험협회 광고심의 규정 개정 추진*('18.上)
 - * 방송 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 마련('17.12월,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평가시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도록 신용평가모형 개선('18.1월)
-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상품안 검토 및 논의 진행
 - * T/F를 통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 검토('17년), 상품안 확정·발표('18.1월)
-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소득인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카드발급 및 한도부여 관련 모범기준 개정('17.12월)
 - * 배우자 소득 증빙관련 서류 간소화 등
-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 금리를 쉰 업권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18.4월)
 - * (영국) 약정금리 + 1~2%p, (미국) 약정금리 + 2~5%p, (독일) 기준금리 + 2.5%p

2. 향후 추진예정 과제

- (상반기) 금투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18.1분기), 온라인 햇살론 출시('18.1월)
- (하반기)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해소 추진('18.말)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별 추진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성과 (또는 기대효과)
1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 연체금리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연간 약 5.3조원의 연체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발족('17.9월), 실무작업반 분석개시('17.9월~)
3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상품의 불완전 판매요인 개선	-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제재 -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개 홈쇼핑 검사 실시 ('17.4분기), 보험협회 광고 심의규정 개정('18.上)
4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여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불완전판매 감소 및 투자자 방어권 강화('18.1분기 중 법률안 마련)
5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 보험가입 내역, 숨은 보험금 등 통합 조회 가능한 시스템 마련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17.12월)
6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평가시 재기사업자의 과거 불이익한 정보 활용 제한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8.1월)
7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추진	-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 T/F 검토('17년), 상품안 확정·발표('18.1월)
8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에 온라인 대출방식 도입	금리인하 혜택 제공 및 접근성 제고('18.1월)
9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TP 이용 불편 해소 ('18년말)
10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 및 한도 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 등 신용카드 이용 편의 개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 개정* 완료('17.12월) * 전업주부 소득인정 방식 개선, 배우자와 이용 한도 통합관리 폐지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1 실물 여건

□ 글로벌 경기 회복 속에 수출·설비투자 중심으로 3%대 성장

- 미국·유로존·일본 등 주요국은 '17년중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18년중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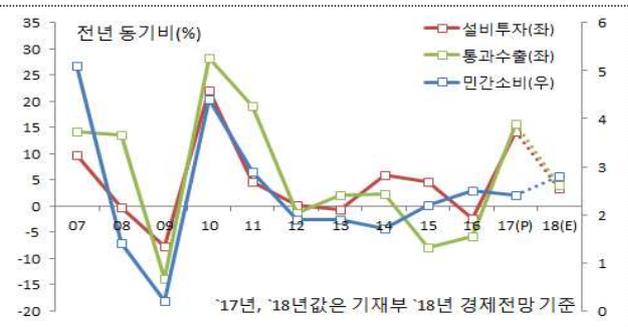
* '17년 성장률(잠재) : 美 2.3%[1.7%, CBO], 유로존 2.4%[1.0%, ECB], 日 1.8%[0.8%, BOJ]

- 우리 경제도 '17년중 수출·설비투자 중심으로 3년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였고, '18년에도 민간소비 회복 속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세계·한국 경제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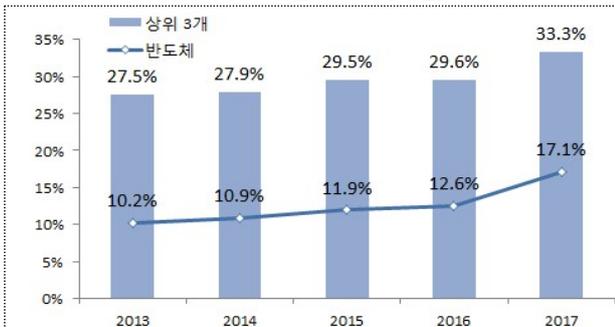
< 통관수출·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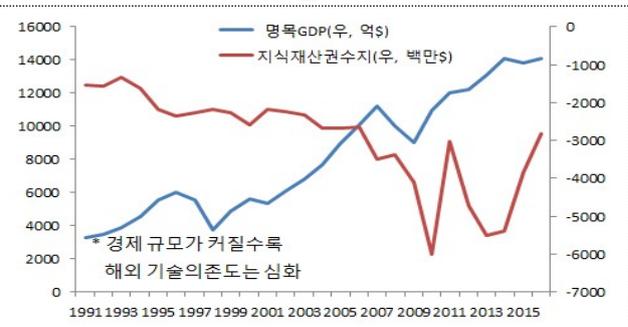
□ 다만, 주력산업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지체

-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보다 심화되는 모습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지체

< 총수출 중 3대 품목 및 반도체 비중 >



< 지식재산권수지 추이 >



⇒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

2

자금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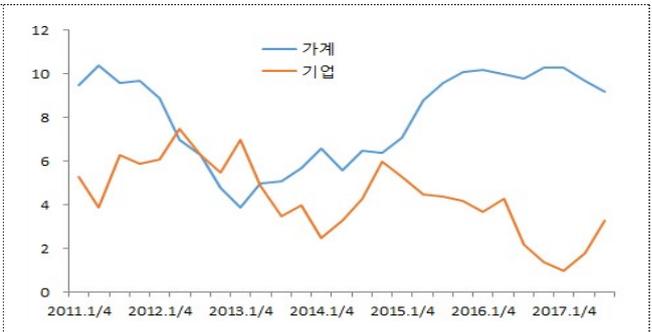
□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 부문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

- 완화적 통화기조 등으로 실물경제 성장세 이상으로 경제 전반에 금융 공급이 확대 → 민간부문의 부채 및 금융부문의 자산 확대
- 민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기업 부문은 대기업 대출수요 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

< 민간신용/명목GDP 비율(한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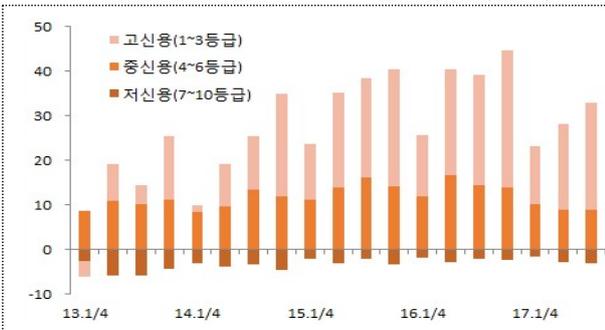
< 가계신용·기업신용 증가율(한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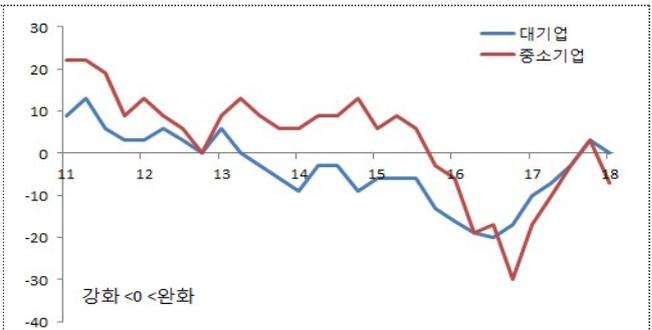
□ 그러나,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는 지속

-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 기반과 담보력이 약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는 지속
- 중소기업 대출도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증가 →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향후 금리인상 기조 속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한은) >



< 은행권 대출태도지수(한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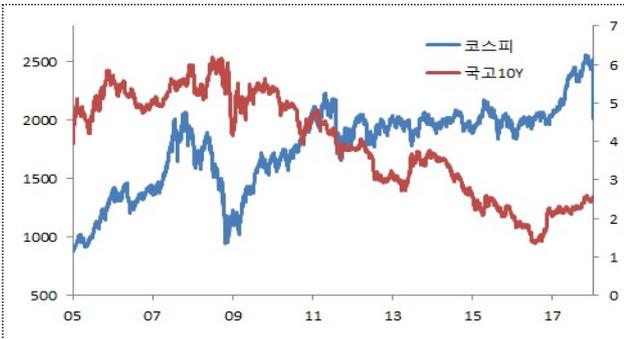


⇒ 서민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금융부문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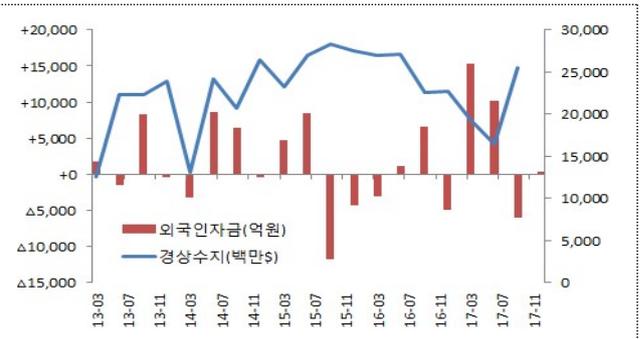
□ 잠재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로 위험 선호 현상(RISK-ON) 확대

- 주식·채권가격(금리)이 높은(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가격도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
- 수출 호조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이 양호

< 주가·금리 추이 >



< 외국인자금 순유입·경상수지 >



□ 잠재리스크가 예상과 달리 전개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주요 리스크 요인 부각시,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기업의 부담이 증대될 우려

< 참고 :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

- (연준 금리인상) 美 물가지표 변화, FOMC 인적구성 변화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현재 3회 인상 전망, '17.12월 연준 위원 전망)
- (중국 디레버리징) 주택시장 안정화, 과잉설비 산업구조조정, 그림자 금융 관리 강화 등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불안·성장 둔화 우려
- (보호무역기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교역 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북한 리스크) 북한 리스크가 재차 부각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시장교란행위, 사이버 리스크, 가상화폐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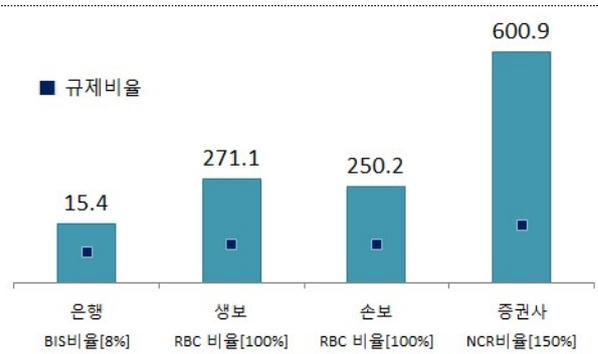
□ 금융공급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양호

- 대출 확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17년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
- 건전성도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며, 시장 금리 상승 등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여력도 충분

< 은행권 순이익 · ROA >



<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



□ 하지만,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

- 이익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경쟁 확산과 혁신 노력 부족 등으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시장기대가 낮음
- 불공정 영업관행, 폐쇄적인 지배구조, 연이은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

< 은행 산업 주가 순자산 비율(PBR) >



* 출처 : 블룸버그, 미국의 경우 S&P500 기준

< 전반적인 금융인식 >



* 출처 : 금융위, '16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비스

⇒ 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 필요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금융안정과 엄정한 시장질서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
 - (금융부문 쇄신) 금융당국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쇄신을 유도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
 - (생산적 금융)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견인
 - (포용적 금융) 서민·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뒷받침
 - (금융산업 경쟁 촉진) 혁신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을 제고
 -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교란요인에 엄정 대응
- ➔ '4대 추진전략 및 3대 추진기반'에 따라 '18개 핵심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금융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 추진전략 1. 금융부문 쇄신 】

- ① 금융당국 혁신
- ② 금융산업 쇄신
- ③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추진전략 2. 생산적 금융 】

- ④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⑤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추진전략 3. 포용적 금융 】

- ⑦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⑧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⑨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⑪ 국민 자산형성 지원
- ⑫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

【 추진전략 4. 금융산업 경쟁 촉진 】

- ⑬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 ⑭ 핀테크 활성화
- ⑮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기반.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

- ⑬ 금융안정 유지
- ⑭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⑮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4 대 전략

1 금융부문 쇄신 → 금융신평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

- 금융당국 혁신
- 금융산업 쇄신
-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2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적극 지원

-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3 포용적 금융 → 소득주도성장 지원

-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 자산형성 지원
-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

4 금융산업 경쟁 촉진 →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 핀테크 활성화
-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 기반

1 금융안정 유지

- 리스크요인 점검 · 대응 강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2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3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 가상통화 대응
-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

「금융혁신」의 일관된 추진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금융비용 절감)**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수수료 인하 등으로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이 상당 수준 절감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인당 약 38만원)
 - ※ 연체가산금리 인하 : 연간 5.3조원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
-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금융과 복지지원 사이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민들도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 이용 가능
 - ※ 정책서민금융 공급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간 7조원 공급, 약 55만명 혜택(인당 약 1,300만원)
 - ※ 사잇돌 대출 확대 : 약 30만명의 연간 이자비용 약 1,000억원 절감(인당 약 33만원 절감)
- **(소비자선택권 확대)** 핀테크·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 ※ 빅데이터 : 개인의 성향·소비행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 중금리 대출, 보험료 할인, 맞춤형 카드혜택, 소상공인 지원(지역별 상권분석) 등이 가능
 -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
 - ※ 특화금융사 출현으로 그간 수요는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서비스 출시
-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

□ 기업 : 혁신창업·중소기업이 필요 자금을 원활히 조달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모험펀드, 창업·보육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이 보다 용이
 - ※ 혁신모험펀드 : ('18년) 2.6조원 → ('18년~'20년)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약 2,500개 기업 혜택(기업당 약 40억원)
 - 연대보증 폐지로 혁신기업의 '두려움 없는 창업·재도전' 가능

- **(기업 자금애로 해소)** 혁신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
 - ※ 초대형 IB : 기업금융 의무비율(50% 이상) 도입 → 5개사 기준, 최대 24조원 지원
 -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과거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동산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
 - ※ 정책금융기관 중기 지원 : 연간 122.1조원 공급, 약 42만개 중소기업 혜택 (기업당 약 3억원)
 - ※ 기술금융 공급계획(평가액 기준) : ('17년) 80조원 → ('18년) 105조원 → ('19년) 130조원(약 45만건 지원)
 - ※ 동산담보 활성화 : 부동산담보가 없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기계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원활한 자금 조달 가능

□ 경제 전체 :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뒷받침

- **(가계소득 증대)** 가계 금융비용 절감·재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적극 지원
 - ※ ISA 세제혜택 확대 : 비과세한도 확대(250만원→400만원), 중도인출 허용
- **(혁신성장)** 가계대출·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유동성을 벤처·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여 경제 혁신동력을 강화
- **(일자리창출)** 핀테크 등 다수의 특화 금융사업자 출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경제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 ※ 핀테크활성화 : 핀테크 기업수를 현재의 2배로 증대('17.11월 208개 → '22년 400개)
 - ※ 혁신모험펀드 : 펀드조성 후 중장기적으로 약 2만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
- **(공정경제)** 금융부문 쇄신과 함께, 대기업·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정책

추진전략①

금융부문 쇄신 → 금융신뢰 회복 및 공정경제 구축

① 금융당국 혁신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18.1월)하여 충실히 관리·이행
 - * 권고사항(73개)을 최대한 수용하여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방안 마련
 - ** 혁신위 권고내용중 당장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방안을 검토·마련
- (직원행동강령 마련) 금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등에 대한 직원행동강령 마련('18.3월)
 - 타 부처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
 - * 금융부문은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안, '17.12월)

② 금융산업 쇄신

- (금융권 채용실태 점검·개편)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금융공공기관) 채용실태 관련 자체점검 및 전면 점검 실시('17.10~11월)
 -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17.11월~)

- (민간금융기관) **소 금융권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17.10~11월)
 - 은행권 채용실태 자체점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금감원, ‘18.1월)하고,
 - 특혜 등 점검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하여는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
 - 검사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은행연합회)

* 예 : 평가수정 여지 등 차단(태블릿 PC 활용 등), 채용시스템 주기적 점검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보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

-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18.2월 방안 발표, ‘18.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 >

- CEO 후보군 관리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 마련
-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제한
-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여 독립성 강화
- CEO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도 추진

-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 유도(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18.4분기)
 -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하여 평가받도록 개선

3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18.2월 방안 발표)

※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발표('18.2월) → 시스템 구축 및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영('18년중)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 제정 추진('18.下)

○ 감독체계·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

* 감독대상(안)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 그룹은 제외)

○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금융 ↔ 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전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본건전성 제고*

* 계열사간 출자·거래관계, 그룹 지배구조 등에 따른 부실전이 위험을 점검·평가하고,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 실효성 제고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 유도 등 지원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주요 과제 (예시) >

- 민·관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수시 제공
- 연기금·정책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위탁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우대, 일정 요건 충족시 투자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등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기금의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투자일임시 의결권 위탁 허용 검토, 기관투자자 공동행동 활성화 등

- **새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
- **감사위원회 운영, 위험 관리** 등 핵심적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및 모범사례** 제공 확대
 - * 기관 설립 등 제도 도입여부 확인에 치중하는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 극복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 '18.3분기)

- **(회계투명성 제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개혁과제의 합리적 제도 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신뢰도 제고**
 - * '17.10.3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18.11.1일 시행

< 회계개혁 과제 주요 내용 >

- (기업)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내부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실효성 확보, CEO·CFO 등에 대한 회계교육(윤리, 실무 등) 체계 마련 등
- (회계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 (감독기관)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선진화*, 감리에 계좌 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성실도 반영(국세청) 등

*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회계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

-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도** 함께 추진
 - * 예: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징계·공시 강화,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실무지침 제정 등

①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혁신기업 「창업」 촉진) 민간의 창업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융복합 금융지원도 확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 등 창업기업 투자기구의 투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예비창업·분사형 창업기업 보증, 보증연계 투자 등을 확대하여 창업단계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
-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18.1.17일 방안 발표)를 통해 성장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Scale-up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3년간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영하여 혁신기업의 성장·M&A·회수를 지원하고, 20조원의 보증·대출 프로그램과 연계
 - *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모태펀드에서 조성
 -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 구축
 - * 예 :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후순위 출자 등
 - ** 민간주도 출자사업 도입, 펀드운영위원회 및 운용사 선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포함
 - 혁신·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A, 사업재편, 기술거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히, 혁신기업의 M&A·buy R&D·분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관계부처 협업과제)

□ **(코스닥을 통한 「도약」 기반 강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하여 혁신 벤처기업의 Scale-up을 지원

*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8.1.11일)

- 코스닥·코스피시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혁신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

*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권한 등을 민간위원 중심의 코스닥위원회로 이관

- 코스닥 상장기업 및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기재부 협업), 코스닥 Scale-up 펀드(3,000억원) 조성

-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

*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1개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요건 다변화

□ **(실패기업 「재기」 지원 강화)**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폐지('18.3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기·재창업 지원 확대

-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의 시중은행 부담분(15% 내외)까지 확대 유도

* ('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연대보증 면제 → ('18.3월) 7년 이후 기업도 면제

- 신규자금 공급 위축 우려 완화, 부실률 관리 등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

- (재기·재창업 지원)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고 재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간 불이익정보의 공유를 제한

** 재기 의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기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

②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 시중자금이 가계부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 개편

*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발표 ('18.1.19일)

○ 은행 예대율 개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규제부담 상향 등 가계 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 대출금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 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예 :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 자본 적립 비율'을 결정 →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자본(보통주) 적립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 중기 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융자시 자본규제(NCR) 부담 대폭 완화 등

□ (기술금융 활성화)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편('18.6월 방안 발표)

○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고 평가품질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특허권 수→특허권 가치), 매출·영업전망 평가 강화, 기술금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전문인력 교육 강화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의 통합을 추진하여 기술력이 신용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8년)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마련 → ('19년) 은행별 통합여신모형 개발 → ('20.上) 여신모형 승인 추진(바젤규정에 따라 최소 '19.6월 이후 여신모형 승인 가능)

- **(동산담보 활성화)** 동산이 중소기업의 담보자산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18.2월 방안 발표)
 - 동산담보 이용가능 기업 및 담보물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동산담보 대상 대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이용가능 기업(제조업→여타업종 확대), 담보물 범위(원재료→완제품 확대), 동산담보 취득 가능 대출상품(동산담보 대출 → 시설자금, 구매자금 확대)
 - 은행이 동산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평가-사후관리-매각' 관련 인프라 조성*
 - * 외부기관에 의한 동산평가 심층정보 제공, IoT 사후관리 기반 마련, 금융권 동산담보 물량의 전문시장 매각 집중 및 기업 구매자금 지원 등

- **(정책금융 역할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18.4분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2조원 확대
 - * 산은·기은·수은·신보(계획, 조원): ('17년) 117.5 → ('18년) 122.1 → ('21년) 130.0
 - ** 산은·기은·수은(계획, 조원): ('17년) 38.5 → ('18년) 40.1 → ('21년) 45.0
 -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대기업·전통산업 중심 지원에서 혁신·벤처기업·신산업 중심 지원으로 전환
 - * (산은) 혁신성장 선도 금융기관, (기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 (신보) 시장형 보증기관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중소조선사) RG 발급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금융어로 대응반)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중소 조선사의 애로에 적극 대응**
 -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보)의 RG 발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18년, 250억원)
 - *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산·기은이 RG 발급시 신보에서 보증 제공

□ **(조선업 협력업체) 정책금융기관 현장 대응반***을 통해 조선사 및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

*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 각각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 2인 파견

-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 검토

□ **(지방 중소기업 지원) 지역 조달자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18.上 방안 발표)

- 예금수취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저소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정량·정성지표를 다양하게 평가하되,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실물경제 규모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지표 마련

- 평가결과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시토록 하거나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

* 美 지역재투자 제도(CRA) : 저축기관의 지역에 대한 대출·투자·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는 공시 및 감독당국 인·허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

□ **(크라우드펀딩 이용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속적 규제완화 추진**

-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18.下)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

- 일정 금액·횟수 이상을 투자한 투자경험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확대*(18.下)

* 적격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한도가 2배 확대(연간 기업당 500만원, 누적 1,000만원 → 기업당 1,000만원, 누적 2,000만원)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18.下)

* 예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금융상품 매매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적용 배제

①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법정 최고금리 인하) '18.2.8일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여 저신용 취약계층(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 경감(최대 1.1조원 경감 추정)
 - * 대부업법 27.9% → 24%, 이자제한법 25% → 24%
- 금리 인하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 특례 대환상품(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총 1조원 공급
 - * (대상) '18.2.7일까지 금리가 24%이상인 대출을 이용한 차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하였으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 / (금리) 12~24% / (한도) 최대 2천만원
-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서민자금*의 효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질적 개선 추진
 - * 4대 정책서민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공급규모 : ('15년) 4.7조원, ('16년) 5.1조원, ('17년) 6.7조원(예상) 등 '08년 이후 총 33.4조원 공급
- 종합신용상담 강화, 제도권 금융이용 연계 강화* 등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방식 개선 ('18.下)
 - * 자금지원 前後 컨설팅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성실상환자 이자부담 지원 등
- (중금리대출 활성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17년 3.5조원→'18년 4.2조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
 -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2.15→3.15조원, '18.上)
 - 계열사 정보집적(빅데이터)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주요 금융그룹 등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 * 중금리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에만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산정시 우대) → 여전·상호금융 등으로도 확대(예: 대출자산 운용한도 적용시 우대)
 - ** 예 :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사전승인의무 면제 등

- **(연체방지 및 연체자보호)** 이자부담 증가 등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18.1.18일)

-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주담대 : 3년, 신용대출 : 1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 담보권 실행 유예(최대 1년) 및 매매지원을 통해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

2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18.3월)

* 예)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을 완화 적용 검토

- **(다자녀가구)**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18.3월)

* 예)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m²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 검토

- **(전세보증 이용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8.上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제약 →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 검토

- **(서민 취약차주)**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 도입('18.3월)

* 예)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회복자,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도입('18.5월, 5,000억원 규모)

* (요건)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이하 등

- **(고령층)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8.2분기)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적극 지원

* 예) (현행)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지급 → (개선)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하여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 확보 가능

③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생활·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

-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자금 등 청년·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

-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 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업)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적 인상에 맞추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편*하고 금융상담·교육 내실화('18.2월, 국방부 등 협업)

* 예 : 은행권 군인적금 月적립액 상향 등

- 병사들의 금융상품 가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홍보·안내방안* 수립·추진

* 예 : “복무 중 1학기 학자금 모으기” 등 명확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 (자영업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매 자영업자(소액결제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추진('18.1월 방안 발표, 7월 시행)
 - 카드수수료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에는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 * 소액결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에 연간 약 200~300만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18.上)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19.1월 시행)
 - *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율 조정, PG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 등

□ (노년층)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지속 추진

- 국민들의 자발적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 연금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세제혜택 확대*, 수수료 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연금상품의 투자매력도 제고
 - * 연금펀드·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18년 세법 개정)
 - ** 대체투자 자산 및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등
 -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자산운용 유도*
 - *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식 등을 명시한 표준적립금운용계획서 마련·보급 등
 -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18.下)을 통해 '좋은 연금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금계좌간 이동을 활성화하여 경쟁과 혁신 유도

-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금융이용 차별을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등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18.下)
 -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ATM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18.下)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 장애인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 대리발급 허용('18.上)
- **(금융채무 연체자)**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정리 추진
 -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업권별 상시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소각을 유도('17년중 총 30조원·300만건 소각 완료)
 - 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해 (가칭)'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설립('18.2월부터 신청 접수)
 - *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자 / 약 159만명 추정

④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제도적 기반 구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 마련,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 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 판매와 자문업무간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원칙 규정
 -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
 -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는 판매제한·금지명령권 도입
-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강화

-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 전환
- 금융소비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금융회사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금융이용 부담 경감) 각종 수수료, 대출금리 부과체계의 합리성·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

○ ATM 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를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18.3월)

*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 결정체계의 합리성, 소득계층별 부담현황 등을 검토

○ 금리상승기에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강화(연중)

*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은행연)'에 따라 은행 내부통제 절차 등을 거쳐 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여부 등

○ '보험다모아'에 공시되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18.4분기)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신용대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18.1.30일 방안 발표)

○ '이용업권' 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

-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 (Thin filer)의 불이익을 해소
- 금융회사·CB사에 대해 본인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문재인 케어’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18.4월)하고, ‘문재인 케어’에 따른 손해를 하락효과를 분석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 * 실손의료보험을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에 특약 등으로 끼워파는 행위 금지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18.4월), 단체-개인 실손 연계제도 마련(‘18.上)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금융위 옴부즈만을 ‘금융소비자’ 옴부즈만으로 개편*(‘18.2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시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
 -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위촉
 - ‘18년중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1,200명 이상의 의견청취)을 실시하여 소비자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
 - *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OTP 재발급 관련 불편 개선, 재기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등 10개의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중
- **(채권추심 규제 정비)** 채권자(금융회사·추심업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 개선(‘18.上 방안 발표)
 -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
 - * 부실채권 매각단계 마다 추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심의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

-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사후적인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

*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신용정보원, '17.4월~)을 통해 일부 채무 정보를 제공중

-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 마련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자본금 30억), 매입채권추심업자(대부업법, 자기자본 3억) 등

- (보험 모집질서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민원*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모집질서를 개선(상시)

* ('13년) 39,345건 → ('14년) 44,054건 → ('15년) 46,816건 → ('16년) 48,573건

- 홈쇼핑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광고시 보험소비자 보호사항을 방송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18.上)

-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은 취약 대리점을 집중 감시

* 소형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5 국민 자산형성 지원

- (ISA 혜택 강화) ISA가 국민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본격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추진

- 서민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일반형의 2배 수준으로 강화('18.1월)

* (기존)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
→ (개선) 서민형과 농어민은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

- 일반 서민이 결혼, 질병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SA의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18.1월)

- ISA 도입 이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일몰('18년말) 연장을 추진하고,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확대* 검토('18.8월)

* (현행)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 가능 → (개선) 은퇴 노년층 등의 가입 허용

- **(공모펀드 신뢰 제고)**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수익률 제고, 비용 감축) 판매·운용 시장 구축(17.12월 방안 발표)
 - 판매사 신규 진입 허용(인터넷전문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및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유형별 수익률 공개 등을 통해 판매시장내 경쟁 촉진
 - * 상대적으로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하여 판매시장의 '메기' 역할 기대
 - 투자판단을 위한 핵심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준)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활용하고, 펀드 유형별 명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 예 : A클래스 → 장기투자형
 -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연 50% → 25%), 추천펀드 선정절차 공정성 제고 등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공채 분산투자 규제 완화,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분기 → 반기) 등 과도한 규제비용 감축을 통해 펀드 관리비용 인하 유도

- **(숨은자산 찾아주기)**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예금·보험 등) 조회서비스 지속 제공·개선
 - 소비자가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약 7.4조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17.12월 개시) 개선*
 - * 소비자가 확인한 숨은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내 계좌 한눈에")를 소금융권으로 확대(은행·상호금융 → 우체국(18.上) 저축은행, 증권사(18.下)까지 확대)
 - * 본인의 은행 계좌 잔액조회 → 5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 가능

- **(투자자문·일임 제도 개선)**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투자자문·일임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인 투자자문회사'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본금 등 투자자문·일임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 금융투자업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1인 자문 → 일임 → 사모자산운용)

-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18.下)

* 테스트베드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①track record 축적(예: 2~3년) & ②최소자본금(40억원) 충족시 허용

-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18.下)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 환경 구축

* 투자자 이익 최우선 의무, 중요사항 통지 의무, 기록보관 의무 등을 구체화

6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부·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18.1분기 방안 발표)

-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연 50~80억원 규모) 및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18년 400억원)를 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펀드'를 조성·운영('18.上, 300억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도 확대('18.2분기)

* 유망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업력제한 완화(現 7년 이내 → 완화) 등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융자시 중개기관 활용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회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을 추진

* 우선 개별 기관별로 적합한 평가방법 마련·적용 후 이를 바탕으로 추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등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연계·협력 및 투·융자 실적 공유 확대를 위한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금융회사 자금공급의 **일자리창출 기여도*** 및 **자체적인 고용 수준****에 대한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지표 개발**

* 예 : 일자리 창출 관련 자금공급 및 관련 상품개발 실적

** 예 : 자체 신규 고용수·증감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18.上)** 및 **의견수렴(18.3분기)** 등 추진

- 동 지표를 활용하여 **경영공시, 금융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금융권의 자발적인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금융” 실현**

- **(보험권 사회공헌사업)**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건강·휠체어** 등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

*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교육보험 지원, 고아원 소속 어린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등

- **(카드사 사회공헌사업)** 영세자영업자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 확대***

* 영세가맹점의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이용시 금리 우대(연 4.5% → 4.0%),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중인 영세가맹점에 사업자보증금 저리 지원(총 20억원)

-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은행권 등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상시화하여 서민금융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활용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①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최소자본금 등 인가요건 완화, 적극적 인가 정책 운용 등을 통해 신규진입 촉진(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18.1분기)
 - (인가요건 완화) 영업형태·고객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전문 금융회사, 소규모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합리화
 - * 상당기간 신규진입이 중단되었던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 허용도 검토
 - (새로운 금융업 출현 촉진) 쉐업권에 걸쳐 대상고객, 취급업무 등이 특화된 금융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예 : 소매·온라인전문 금융회사 설립,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금융회사 설립 등
 - (인가절차 개선) 금융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및 인가절차의 신속성 제고방안 등 마련

②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대) 新기술-금융간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확대(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18.2월)
 -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등 촉진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본인정보 활용 여건 마련 검토
 - 본인인증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확대(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운영)

-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사전 규제 → 사후규제(테스트 허용)”로 획기적 전환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규제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문은 엄격히 규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시행*
 - *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핀테크 기업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18년)

-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을 조성('18.2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을 지원
 -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데이터 처리·이용을 활성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등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분석역량 강화도 지원
 - 공공부문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사간 정보격차도 해소
 -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한 표본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
 -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실질화·합리화 및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

3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분야 혁신 지원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18.2분기)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 행정지도 관리 체계화('18.3분기)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금융당국간 외교관계 강화, ODA를 활용한 금융인프라 지원, 현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 당국간 MOU 체결, 범부처 외교활동(예: 정상회담,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
 - EDCF(유상원조)·KSP·KOICA(무상원조) 사업에 금융인프라 분야가 포함되도록 기재부·외교부·수원국과 사업필요성 등을 지속 협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등을 활용하여 현지정보 공유 및 애로해소 지원

* 금융연구원(사무국)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중(20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협회로 구성)
- (은행업) 핀테크, 비대면·모바일 플랫폼 확대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바젤규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준비
 - 은행과 ICT 기업간 협업 증가에 따라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및 업무위탁 현황을 점검하고, 운용 탄력성 제고 등 개선방안 검토
 - 바젤Ⅲ 규제개혁 합의사항의 도입·이행('22년)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도모

* 바젤규제 도입 TF를 구성·운영('18.1분기)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규제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발표('18.3분기)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보험업)**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강화
 - **(건강증진형 보험)** 치료에서 예방(cure → care)으로의 사회적 관심 변화에 맞춰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18.上)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여 계약자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을 받는 **혁신상품 개발 촉진**
 - **(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강화)** 대체부품 특별약관*을 마련(‘18.1분기) 하고, 사고발생시 **보험료 할증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18.下)
 - * 자기차량손해 사고 수리(쌍방과실사고, 대물사고 제외)에 부품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가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
 - ** 자동차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시 차년도 보험료 예상 할증규모를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회시스템 마련
 - **(건전성 감독 강화)** **보험회계기준(IFRS17) 개편**(‘21년)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지급여력제도(RBC)의 국제적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제고**
 - * ICS, SolvencyII 등 선진국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기반으로 충분한 테스트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K-ICS) 마련
- **(금융투자업)**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자금중개기능을 강화**
 -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운용현황, 기업 자금 지원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추진(‘18.下)
 - *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의 50%이상을 기업금융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투자중개업만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하여 모험자본 중개에 특화된 다양한 플레이어 육성
 - * 인가제→등록제 전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중장기적으로 NCR규제 등 면제

○ 금융투자업자가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NCR 위험값 산출시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18.上)

*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 (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

○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간소화***, **운용규제 개선**** 등 추진

* 창투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PEF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

** CB, BW 이외에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전환우선주 등)에 대한 투자 허용

○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최소자본금 요건 20억원 → 10억원, '18.下)

○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장 경쟁 촉진 방안 등을 검토***

*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활성화,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 여건 검토(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등

□ **(저축은행·상호금융업) 지역금융·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합리화** ('18.下 방안 발표)

○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 규제 개선**(예 : 증자 요건(現 지점당 40~120억원) 완화) 등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강화** 유도

○ **상호금융의 부수업무 확대*** 및 **신탁 감독기준 개편 연구를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다른 금융권에 허용된 공과금 수납·지급대행, 상품권 판매대행, 지자체 금고 대행 등 허용(신탁법 개정 추진)

□ **(신용정보산업)** 신용정보업(CB업)이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정보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18.上)

○ 산업특성에 맞게 법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과점상태인 신용정보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

* 현재는 개인/기업 CB 구분없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회사 50%이상 출자요구

○ CB사에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시장의 확대·발전을 선도*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CB사들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

① 금융안정 유지

- (리스크요인 점검·대응 강화)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
 -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시장 변동성 확대시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과감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철저히 준비
 -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건전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유동성 제고를 유도
- (회사채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대비 강화
 - (P-CBO) 신보의 회사채유동화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18년 2조원)
 - (회사채 인수지원) 산은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6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 * 중소·중견기업의 중위험 회사채(BBB⁻~A⁺) 미매각분(최대 30%)을 산은에서 인수
 - (채권시장 안정펀드)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펀드(10조원+a)를 즉시 가동하는 등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 강화
 - * ('16) 11.6% → ('17) 8%대^o → ('18년 이후) 추세치 보다 0.5~1.0%p 낮은 수준 유도
 - 新DTI('18.1월), DSR('18.下) 도입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취급을 억제

○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下)으로 **소 금융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 은행, 보험, 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既 도입

-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 (은행) 고정금리('17년 45% → '18년 47.5%), 분할상환('18년 55%)

* (보험) 고정금리('17년 30% → '18년 35%), 분할상환('18년 50%)

-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방안*** 마련('18.上)

* 예 : 적격대출 양수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커버드본드 취급 실적 반영, 커버드본드 발행절차 개선 등

○ (가칭)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 운영('18.3월~)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응 강화

□ **(상시 구조조정) 구조조정 채권 매각 활성화,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기지원 통합센터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추진 기반 확충**

○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리 기준* 및 행태를 개선하여 부실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조를 혁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정비,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련 총당금·건전성 기준 검토, 은행의 KPI 등 인센티브 개선 등

○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17.12월 방안 발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

* 최초 1조원 규모로 조성('18.上)하고,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증액을 검토

○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자본시장)·공급자(기업)가 집결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18.3월)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을 도입('18.上)

* 회생기업 중 정상화 가능기업을 선별하여 채권결집·매각 및 DIP 금융 지원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등

-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를 선진화(18.下)
 -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미리 작성토록 하여 부실시 자체정상화 또는 정리절차를 신속히 추진
 - 대마불사(大馬不死)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금 투입 없는 정리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 및 G20 합의사항
 -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과도한 고금리 상품 등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제도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정리 추진
- **(공적자금 관리)** 공적자금 회수전략 및 상환계획을 재수립하여 공적자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
 - 공자위 논의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전략을 수립하고, 매각여건이 조성된 자산부터 신속히 매각하여 회수 극대화 추진(상시)
 -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실시하여 향후 10년간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채무의 완전상환 및 공정한 상환분담 추진(18.2월)
 - * '02년 상환대책 수립후 상환부담 점검, 재정규모 산정 등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

②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
 -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주관,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등 참여)으로 일제단속 실시(18.2~4월)
 -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벌금 5천만원 → 3억원) 및 배상책임 강화(최고금리 초과 이자 → 전체 이자) 추진(대부업법 개정 추진)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역량 및 제재 강화**
 -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본시장 조사단'의 위상 및 조사역량 강화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17.12월 구축 완료)을 본격 가동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17.3월 도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사의 효과성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에 대한 과징금 신설·병과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법무부 협조)
 - 손해배상 시효도 확대(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 → 각각 2년, 5년으로 확대)

-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금융시스템이 범죄수익의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체계 정비**
 -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및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NRA)하고, 고위험 분야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 * 관계부처 공동으로 범죄수익, 법·제도, 시장 감시체계 등 국가 전반의 위험평가 및 대응체계 수립('19.2월부터 실시되는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의 핵심 과제)
 - 방위사업비리 등 주요 범죄 관련 의심거래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가상통화 등 신종 자금세탁유형 관련 심사분석 강화
 -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진단 및 추진전략 마련
 - 금융회사(해외점포 포함)에 대해 위험평가시스템(RBA)을 활용한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전제재를 확대

- **(금융 전산보안 강화)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
 -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정보* 공유체계를 자동화하고, 이상 금융거래(금융사기)정보 시스템의 공유대상을 확대**
 - * 공격자 IP주소,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 등
 - ** 현재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사 등 70여개 → 저축은행 포함

□ **(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 지표금리 등 금융지표(benchmark)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주요국은 LIBOR 조작사건('12.8월) 등을 계기로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지표 관리원칙' 등에 기반하여 "금융지표(benchmark)" 관리체계 강화 추진중

○ 코픽스 등의 산출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제출은행 및 지표산출기관(은행연)의 내부통제 및 사전·사후 검증절차 강화

○ 금융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18.下)

* 금융지표 산출 과정에서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산출절차 규정, 금융지표 산출 중단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 등

- 금융지표 산출과정에 대한 검사·제재 등의 공적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고의적인 금융지표 조작(manipulation) 가능성 등을 차단

○ 협회의 금융지표 산출은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별도 법인*으로 산출업무를 이관·관리하는 방안 검토

* 주요 금융지표 산출기관 분리 사례 : (EU) EBF(은행연) → EMM(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 (영국) BBA(은행연)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호주) AFMA(금융시장협회) → ASX(증권거래소), (일본) JBA(은행연) → JBA TIBOR Administration, (홍콩) HKAB(은행연) → TMA(Treasury Market Association)

③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 **(가상통화 대응)**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투기과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시행('18.1월)

*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

-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토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필요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특금법 개정 검토

□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 핀테크,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방지체계 구축**

-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 관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용역 완료('17.9월)

- 가장(假裝) 법인 설립 등 전문직종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 특정직(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에 대한 의무부과 추진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지속 점검

*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거래 변화 및 자금세탁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P2P대출 법제화) P2P대출 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P2P대출 영업 및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 P2P대출 플랫폼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P2P대출 관련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확보

- P2P대출의 부동산대출 쏠림을 완화하여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중금리 대출채널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강화

V. 공통과제 추진계획

1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

□ 추진 배경

-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본연의 자금증대기능을 강화할 필요
 - ➔ 생산적분야로 자금공급(생산적금융)을 통해 혁신성장을 구현하고, 서민금융·재산형성 지원(포용적금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

□ 주요 내용

- (생산적 금융)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금융 본연의 자금증대 기능 강화 등으로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강화
 - * (창업) 벤처투자 확대, 창업·보육시스템 조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육성
 - * (성장) 혁신모험펀드(10조원)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 (도약)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회수 지원
 - * (재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18.3월) 등 창업자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 * (자본규제 개편)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BIS규제·예대율 개편
 - * (정책금융 확대) ('16년) 110.7조원 → ('21년) 130.0조원(산은·기은·수은·신보)
 - * (동산담보·기술금융)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
- (포용적 금융) 취약계층별 서민금융 지원, 재산형성 지원 등으로 가계부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
 -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공급한도 3.15조원) 등 지원
 - 법상 최고금리 인하('18.2.8일, 24%),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 등 국민 재산형성 지원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 장기소액연체자(159만명) 적극적 채무조정,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서민의 재기를 적극 지원

□ 논의 배경 : 정보 보호론 vs. 활용론

- (보호론) Privacy권의 헌법적 가치, 다수의 피해가 발생가능한 정보 사고의 성격 등을 감안할 경우 엄격한 사전규제가 필요
 -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등 빈번한 정보사고로 금융권 정보 활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존
- (활용론) 전세계적으로 적극적 정보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자칫 실기할 우려
 - 우리의 정보보호규제는 주요국과 비교시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며, 형식적·경직적 운영**으로 실질적 정보보호도 미흡(“규제의 역설”)
 - * 국내 정보보호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BBC, '13.6월)
 - ** 예 : 정보활용 사전동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동의서 양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4%)은 미미

□ 주요 내용 : 선진국 수준을 감안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 도모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개선 노력
 -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금융권 정보 활용을 활성화
 -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
 - 공공부문(신용정보원 등)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고, 대·중소형사간 정보격차도 해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
 -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을 내실화하고,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
- 금융분야 정보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
 - 개인/기업 신용정보산업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분석역량을 축적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의 EMP 공격 위협('17.9월)에 따른 금융 데이터 소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들은 EMP 공격 등에 의한 전산센터 마비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 중인데,
 - * 재해복구센터 구축, 데이터 소산 등
 - '핵 EMP' 등 대규모 EMP 공격에 대한 대비를 보강할 계획
- DDoS, APT 등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능동적 침해위협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율보안체계 확립 필요

□ 주요 내용

-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및 소산센터, 금융권 공동 소산센터)을 구축하여 EMP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에 대응
 - 대규모 EMP 공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적 대응준비 강화*
 - * EMP에 안전한 저장매체(예 : 테이프) 이용, 자체 소산장소에 EMP 차폐시설 구축
 - 한은이 구축중인 금융권 공동소산센터*에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EMP 공격에 대응('18.하)
 - * 금융권 데이터 공동소산센터 구축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13.7월, 금융위)」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추진중('16년에 백업센터 → 소산센터로 변경)

< 참고 : 재해복구센터 및 데이터 소산시설의 기능 >

- 재해복구센터(전산시스템+정보 저장) : 주 전산센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백업되어 전산센터가 마비되더라도 곧바로 금융서비스 운용이 가능
- 데이터 소산시설(정보만 저장) : 중요한 정보만 정기적(예:매주)으로 별도의 매체(하드디스크, 테이프 등)에 따로 보관

- 정보보호 진단 자율평가*에 RegTech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정보 보호 취약부문을 관리·개선(RegTech 시스템 구축, '18.하)
 - * 금융회사의 IT 보안정책 및 보안조직, 업무프로세스 등 정보보호 통제 수준을 계량적으로 진단하여 회사의 고유위험이 관리가능 수준 여부를 측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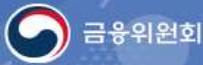
근무혁신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고 정책품질 제고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혁신 추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품질 제고)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정책품질 향상 유도
 -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직 공무원 확대 등 보완사항을 지속 검토
 - * 금융감독업무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시행('17.5월)
 - 금융위·증권위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 안건 원칙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증권위 운영규칙 개정 시행('18.1.1)
- (업무혁신) 업무효율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원 업무방식을 근원적으로 개선
 - 부서 및 개인별 업무매뉴얼과 인수인계서를 재점검하여 개선·보완
 -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고 직원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대폭 강화
 - * 구두보고 활성화, 회의 자료 간소화, 퇴근 직전 업무지시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근무여건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제도 개선 추진
 - 연가사용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강화된 육아·복지제도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
 - * 연가사용일수 권장일수 11일로 지정, 월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철저 등
 - 긴급한 현안을 제외한 주말 근무 등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초과 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금융소비자

- 금융비용절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최대 293만명,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인당 약 38만원)
 - 연체자 부담 완화 (연체가산금리 인하)
 - 연간 5.3조원 연체이자 경감 효과
- 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책서민금융 공급
 - 연간 7조원 공급, 약 55만명 혜택 (인당 약 1,300만원)
 - 중금리대출 활성화
 - 사잇돌 대출 (누적공급한도 3.15조원)을 포함하여 연간 4.2조원 공급

기업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혁신모형펀드 신설
 - '20년까지 10조원 조성, 약 2,500개 기업 혜택 (기업당 약 40억원)
 - 연대보증 폐지
 - 약 5.5만개 창업-중소기업, 최대 16.3조원 면제 (기업당 약 3억원 면제)
 - 초대형 IB
 - 벤처-중소기업 등에 최대 24조원 지원
- 중기 자금으로 해소**
 -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 연간 122.1조 공급, 약 42만개 중소기업 혜택 (기업당 약 3억원)
 - 기술금융 공급 확대
 - '19년까지 130조원, 약 45만건 지원

경제

- 가계소득 증대**
 - ISA 세제혜택 확대
 - 비과세한도 400만원 등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 일자리 창출**
 - 핀테크 활성화
 - '22년까지 기업 2배로 증대